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2009. 3. 13 조례 제318호]

일부개정 2011. 1. 7 조례 제 367호
 일부개정 2011. 6. 10 조례 제 379호
 일부개정 2011. 11. 25 조례 제 399호
 일부개정 2012. 5. 18 조례 제 418호
 일부개정 2012. 12. 21 조례 제 458호
 일부개정 2013. 5. 16 조례 제 476호
 일부개정 2013. 12. 12 조례 제 513호
 일부개정 2014. 4. 4 조례 제 530호
 일부개정 2015. 1. 1 조례 제 560호
 일부개정 2015. 7. 1 조례 제 593호
 일부개정 2016. 10. 14 조례 제 690호
 일부개정 2016. 12. 23 조례 제 712호
 전부개정 2017. 6. 30 조례 제 753호
 일부개정 2017. 12. 15 조례 제 786호
 일부개정 2018. 11. 2 조례 제 827호
 일부개정 2019. 12. 26 조례 제 910호
 일부개정 2020. 6. 25 조례 제 920호
 일부개정 2020. 12. 18 조례 제 951호
 일부개정 2021. 12. 28 조례 제1020호
 일부개정 2022. 4. 29 조례 제1038호
 일부개정 2022. 9. 30 조례 제1044호
 일부개정 2022. 12. 16 조례 제1065호
 일부개정 2025. 1. 17 조례 제1201호
 일부개정 2025. 6. 11 조례 제12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4조,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증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9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12. 15, 2018. 11. 2, 2019. 12. 26, 2020. 6. 25, 2020. 12. 18, 2021. 12. 28, 2022. 4. 29, 2022. 9. 30, 2022. 12. 16, 2025. 6. 11>

1. 집행기관의 정원: 47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8>

부칙(2017. 6. 30 조례 제75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5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1. 2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6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25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8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8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29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9. 30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16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 17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6. 11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 연구직 · 지도직 · 전문경력관	별정직 · 정무직
기준	99%이상	1%이내

[별표 2] <개정 2022. 9. 30>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이내	6%이내	27.5%이내	30%이내	27%이내	7.5%이상	1%이내

2. 연구직 · 지도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10%이내	90%이상

3. 별정직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50% 이내	(50% 이내)	-	-

[별표 3] 〈개정 2025. 6. 11〉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계		497					
정무직 계		1					
군수		1	1				
일반직 계		473					
3급		1	1				
4급		3	3				
5급		24	17	2	1	2	2
6급 이하 소계		445					
별정직 계		2					
6급상당 이하		2	2				
연구직 계		6					
연구관		-					
연구사		6	5		1		
지도직 계		15					
지도관		1			1		
지도사		14			14		